

#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

#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05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6. 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## 1. 개정이유

- 가. 소방관서 신설(소방안전학교, 백령119안전센터)에 따라 소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,
- 나.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한시기구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  - 정원총수 : 6,243명
  - 집행기관의 정원 : 3,416명
  - 소방안전본부·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2,222명
  -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509명
  - 의회사무처의 정원 : 96명
- 나.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(안 별표 3)
- 다.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(안 별표 4)

## 3. 정원 증원 등 조정내역

- 가.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 : 22명
  - 소방안전학교 : 19명
  - 백령119안전센터 : 3명
- 나.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한시기구 기한 연장
  - 당초 : 2010. 8. 31. → 연장 : 2013. 8. 31.

#### 4. 참고사항

가. 비용소요 추계서(7쪽)

나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(9쪽)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,221명”을 “6,243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2,200명”을 “2,222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과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직급별	기관별	총계	본청 및 소속기관				의회 사무처
			소계	본청	직속기관	경제자유 구역청	
총 계		6,243	6,147				96
정무직 소계		1	1				
일반직 소계		2,506	2,442				64
1급		1	1			1	
2급		1	1			1	
2급·3급		1					1
3급		19	19	10	2	4	3
3급·4급		1	1	1			
4급		109	107	58	6	16	27
5급 이하		2,374	2,313				61
별정직 소계		46	40				6
1급 상당		1	1	1			
4급 상당		9	3	1	2		6
5급 상당 이하		36	36				
연구직 소계		136	136				
연구관		20	20		16		4
연구사		116	116				
지도직 소계		23	23				
지도관		2	2		2		
지도사		21	21				
소방공무원 소계		2,222	2,222				
소방정		12	12	4	8		
소방령 이하		2,210	2,210				
교육공무원 소계		509	509				
총장		1	1		1		
교수·부교수· 조교수나 전임강사		414	414		414		
조교		94	94		94		
기능직 소계		800	774				26

[별표 4]

한 시 정 원(제4조제2항 관련)

구 분	직 종	직 급	정원	존속기한	비 고
총 계	계		67		
	일반직	3급	1		
		4급	4		
		5급이하	61		
기능직		1			
본 청	일반직	5급이하	4	2011.3.31	-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
	일반직	3급	1	<i>2013.8.31</i>	-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
		4급	4		
		5급이하	39		
기능직		1	<i>2013.8.31</i>		
사 업 소	일반직	5급이하	18	2010.12.31	- 도시철도2호선 건설

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인천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(이하 “지방공무원”이라 한다) 정원의 총수는 <u>6,221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소방안전본부·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<u>2,200명</u></li> <li>3. ~ 4. (생략)</li> </ol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6,243명</u>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----- ----- : <u>2,222명</u></li> <li>3. ~ 4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
# 비용소요 추계서

1. 법규안명 :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2. 정원의 변동 내역 : 순증 22명
3. 비용소요 내역

구분 (과목)	산출기초	소요비용
<b>총계</b>		<b>1,147,282,610</b>
인건비	○ 인건비 22	609,043,500
	○ 봉급	562,194,000
	○ 소방령(23호봉) 2,864,700 원 x 2명 x 12월 =	68,752,800
	○ 소방경(21호봉) 2,482,300 원 x 6명 x 12월 =	178,725,600
	○ 소방위(18호봉) 2,168,200 원 x 6명 x 12월 =	156,110,400
	○ 소방장(17호봉) 1,943,700 원 x 3명 x 12월 =	69,973,200
	○ 소방교(10호봉) 1,477,200 원 x 5명 x 12월 =	88,632,000
	○ 상여금	46,849,500
	- 정근수당 562,194,000 원 x 1.0/12 =	46,849,500
수당	02 수당	172,681,810
	○ 가족수당	17,107,200
	○ 배우자 40,000 원 x 22명 x 0.94 x 12월 =	9,926,400
	○ 존·비속 20,000 원 x 22명 x 1.36 x 12월 =	7,180,800
	○ 자녀학비수당	11,086,760
	○ 중학교 51,990 원 x 22명 x 4회 x 0.17 =	777,770
	○ 고등학교 433,880 원 x 22명 x 4회 x 0.27 =	10,308,990
	○ 정근수당가산금	39,480,000
	○ 25년 이상 130,000 원 x 8명 x 12월 =	12,480,000
	○ 20년~25년미만 110,000 원 x 5명 x 12월 =	6,600,000
	○ 15년~20년미만 80,000 원 x 3명 x 12월 =	2,880,000
	○ 10년~15년미만 60,000 원 x 6명 x 12월 =	4,320,000
	○ 위험수당 50,000 원 x 22명 x 12월 =	13,200,000
	○ 연구업무수당	9,600,000
	○ 소방령 60,000 원 x 2명 x 12월 =	1,440,000
	○ 소방경이하 40,000 원 x 17명 x 12월 =	8,160,000
	○ 대우공무원수당	7,613,060
	○ 소방장 1,943,700 원 x 3명 x 12월 x 0.048 =	3,358,720
	○ 소방교 1,477,200 원 x 5명 x 12월 x 0.048 =	4,254,340
	○ 초과근무수당	87,794,790
	- 소방직 8,988 원 x 22명 x 12월 x 37시간 =	87,794,790

구분 (과목)	산 출 기 초					소요비용
<b>복리후생경비</b>						<b>218,198,400</b>
	<b>03 정액급식비</b>					<b>34,320,000</b>
	○ 정액급식비	130,000 원	x	22 명	x	12 월 = 34,320,000
	<b>04 교통보조비</b>					<b>33,960,000</b>
	○ 소방령	140,000 원	x	2 명	x	12 월 = 3,360,000
	○ 소방경, 위, 장	130,000 원	x	15 명	x	12 월 = 23,400,000
	○ 소방교	120,000 원	x	5 명	x	12 월 = 7,200,000
	<b>05 명절휴가비</b>					<b>56,219,400</b>
	○ 명절휴가비	562,194,000 원	x	1.2/12	=	56,219,400
	<b>06 가계지원비</b>					<b>93,699,000</b>
	○ 가계지원비	562,194,000 원	x	1/6	=	93,699,000
<b>업무추진비(기관운영,정원가산,부서운영)</b>						<b>7,200,000</b>
<b>직무수행경비</b>						<b>101,340,000</b>
	<b>01 직책급 업무추진비</b>					<b>3,600,000</b>
	○ 과 장	100,000 원	x	3 명	x	12 월 = 3,600,000
	<b>02 직급보조비</b>					<b>39,660,000</b>
	○ 소방령	250,000 원	x	2 명	x	12 월 = 6,000,000
	○ 소방경, 위	155,000 원	x	12 명	x	12 월 = 22,320,000
	○ 소방장	140,000 원	x	3 명	x	12 월 = 5,040,000
	○ 소방교	105,000 원	x	5 명	x	12 월 = 6,300,000
	<b>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</b>					<b>58,080,000</b>
	○ 대민활동비	50,000 원	x	22 명	x	12 월 = 13,200,000
	○ 방호활동비	170,000 원	x	22 명	x	12 월 = 44,880,000
성 과 상여금	○ 성과상여금 22 명					<b>38,818,900</b>
	○ 소방령(2명)	2,264,000 원	x	2 명	=	4,528,000
	○ 소방경(6명)	2,007,200 원	x	6 명	=	12,043,200
	○ 소방위(6명)	1,804,800 원	x	6 명	=	10,828,800
	○ 소방장(3명)	1,576,300 원	x	3 명	=	4,728,900
	○ 소방교(5명)	1,338,000 원	x	5 명	=	6,690,000

##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<p>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</p> <p><b>제28조 (한시정원)</b>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.</p> <p>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(相計) 조정할 수 없다.</p> <p>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 <p>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.</p> <p>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 <p>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</p> <p><b>제30조 (정원의 규정)</b>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</li> <li>2. 본청·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</li> <li>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</li> <li>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</li> </ol> <p>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